

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생활임금 적용대상(안 제3조)
- 다. 생활임금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9조)
- 라.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및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최저임금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(붙임)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,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,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활임금”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,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.
2. “최저임금”이란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.
3. “근로자”, “사용자” 및 “임금”이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,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.
4. “출자·출연기관”이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·공단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어 지정·고시된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제5조에 따른 구

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시 소속 근로자
 2. 시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
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에 소속된 근로자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적용을 제외한다.

1.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
2.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

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생활임금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
2.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
3.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을 위한 연구·건의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생활임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

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생활임금 업무 담당 실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
2.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4.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
-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계 존속·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5. 그 밖에 위원회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회 심의·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

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생활임금의 결정)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.

1.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

2.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,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·노동 환경

3. 그 밖에 위원회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생활임금의 수준

2. 생활임금 적용대상

3.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.

제11조(생활임금의 장려)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발굴하고 지원

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운영 실태를 성실히 점검하고,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최저임금법」

제8조(최저임금의 결정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심의를 요청하고,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

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조례안 제3조(적용대상) : 생활임금 적용대상(시 소속 근로자 등)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경상북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여 소요임금 산출

○ 추계기간 : 2026년~2030년(5년간)

○ 추계대상

- ①시 소속 근로자, ②시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

2024년 경상북도 생활임금액(시급 11,433원/월액 2,389,497원)에

미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

○ 추계방법

- 2025년 경상북도 생활임금액인 시급 11,670원(월액 2,439,030원)을

적용하여 추계하되, 경상북도 생활임금이 2024년 최저임금에서 16.4%

인상된 11,670원이지만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.7%이므로

이를 차감한 14.7%를 적용하여 계산함

※ 道 생활임금('24년 최저임금 기준 16.4% 인상) - (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.7%) : 14.7%

○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최근 2년간 경상북도 생활임금 평균 인상률

1.95%를 적용하였음

※ 道 생활임금제를 기본으로 추계한 것으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

결과에 따라 생활임금제 적용대상, 생활임금 수준을 달라질 수 있음

○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

(단위: 명, 천원)

구분	계	시 소속 근로자	출자출연 기관
적용인원	1,066	964	102
적용인원 임금	8,316,578	6,632,585	1,683,993
추가 소요예산 (지출임금에 14.7% 적용)	1,222,537	974,990	247,547
담당업무		시설관리, 환경정비, 방역, 안내도우미 등	환경정비 및 청소, 로컬푸드매장 캐셔 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구분		연도		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○ 생활임금	1,222,537	1,246,370	1,270,670	1,295,440	1,320,700	6,355,717
	소계(b)	1,222,537	1,246,370	1,270,670	1,295,440	1,320,700	6,355,717
□ 총 비용(a-b)		△1,222,537	△1,246,370	△1,270,670	△1,295,440	△1,320,700	△6,355,717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구분		연도		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국비	-	-	-	-	-	-
	도비	-	-	-	-	-	-
	시비	1,222,537	1,246,370	1,270,670	1,295,440	1,320,700	6,355,717
	민간	-	-	-	-	-	-
	기타	-	-	-	-	-	-
	합계	1,222,537	1,246,370	1,270,670	1,295,440	1,320,700	6,355,717

5. 부대의견 : 해당 없음

6. 작성자 : 노동복지과 노사정책팀 이인호(☎480-6204)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이 호 정
	팀 장	이 중 호
	담 당 자	이 인 호 (480-6204)